

제277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 2021. 3. 22.(월)

남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자치행정위원회

남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경과

본 조례안은 2021년 3월 1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2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2.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2020.12.22.공포, 2021.6.23.시행)이 개정(2020.5.27.시행)됨에 따라, 제도의 통일성 있는 운영을 위해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구성을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증원하여 총 위원회 인원을 기존 5명에서 7명으로 변경

3. 주요내용

- 가. 남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구성원을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증원하여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 (안 제2조제1항)
- 나. 남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위원 5명 중 1명으로 선임하여야 함 (안 제2조제2항)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1
- 나. 예산조치 : 붙임2 (비용참조)
- 다. 관련부서 : 감 사 관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2020년 12월에 「공직자윤리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이며 주요내용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민간위원 구성을 현행 3명에서 5명으로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의적절한 조례라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남양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현황 (2020. 3.2.기준)

직위	소속기관(직)	성명	위촉일	임기 만료일	비고
위원장	前 남양주경찰서장	김수환	2019. 5.25.	2021. 5.24.	재위촉
부위원장	남양주시의회 의원	신민철	2020.8.13.	임기내	
위원	한국애널리스트회 이사	김선제	2019. 5.25.	2021. 5.24.	
위원	법무법인 우주 대표변호사	이원호	2019. 5.25.	2021. 5.24.	
위원	행정기획실장	김승수	2020. 3. 2.	임기내	당연직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재정수반 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비용 증가요인 없음

4. 작성자

감사관 홍 준 기

☑ 「공직자윤리법」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에 각각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둔다.

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각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국회의원, 국회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법관, 법원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3.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헌법재판소재판관,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5.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회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시·군·구의회의원, 시·군·구의 4급 공무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6.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시·군·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시·군·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7.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4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8.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공직자 외의 공직자와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2020.12.22] [[시행일 2021.6.23]]

④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의 자격, 임기, 선임 및 심사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1.7.29, 2019.12.3] [[시행일 2020.6.4]]

1.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국회규칙

2.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대법원규칙

3.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헌법재판소규칙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5.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대통령령

6.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11.7.29] [[시행일 2011.10.30]]

⑥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법과 제4항 각 호에 규정된 규칙, 대통령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개정 2011.7.29] [[시행일 2011.10.30]][[전문개정 2009.2.3]]